

[기자회견 발언문]

■ 발언 1.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때리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형법의 강간죄 규정은 수많은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폭행, 협박이 수반되어야 강간으로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강간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사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얼마나 피해자가 열심히 저항했는지, 왜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았는지, 심지어는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은 어땠는지와 같은 부당한 질문들을 받고,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우리의 낡은 형법이 강간죄의 요건을 '폭행'과 '협박'으로 정의한 것과 다르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강간·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을 전제하지 않고 발생합니다. 전국 66개 성폭력 상담소 상담 사례 분석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이 전체의 71.4%였습니다. 현실의 성폭력은 지위나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해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피해 양상과 범죄 구성 요건의 크나큰 괴리로 인해 강간·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라는 협소한 강간죄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와 많은 선진 국가들 역시 모두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는 대한민국의 형법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간 구성 요건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UN 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에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다섯 차례나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강간죄 개정 요구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는 그야말로 퇴행 그 자

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로는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정부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권고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신중한 토론’을 진행하자면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토론과 논의 과정은 모른 채하며 무작정 ‘반대’만을 고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편, 정부는 ‘성범죄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하며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행보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과 여성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정부가 저버린 성범죄 피해자의 존엄을 국회가 지켜야 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강간죄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핑계 삼아 모든 성범죄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에서 비로소 강간죄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모든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정부에 맞서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하고, 모든 젠더 폭력 피해자들의 곁에 선 의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2.

성폭력피해자 보호는 법 개정부터다

-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현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며 5대폭력피해자 보호와 지원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그 방침에서 제외된 폭력 피해자들이 있다. 성폭력피해자, 그중에서도 폭행·협박 없는 강

간을 경험한 이들의 상당수가 범죄피해자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무고의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를 겪기도 한다.

정부가 보호하겠다고던 사회적 약자, 그중 성폭력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로 불리지 못한 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성폭력상담소다. 137개소의 상담소들이 함께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는 강간죄 개정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폭행·협박 없는 강간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그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직접 들었고 보았기 때문이다. 폭행·협박이 없는 강간 피해자들은 강간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강간을 당했음에도 폭행·협박이 없어서 강간 피해자가 아니라고 인정받지 못한 경험은 억울함으로 가슴에 남고, 피해 경험은 몸에 남아 일상회복이 어려운 피해자가 많다. 이와 달리, 가해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불기소, 무죄라는 날개를 달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뿐 아니라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역고소를 남발하기까지 한다. 죄지은 이를 떳떳하게 하고 피해당한 이는 침묵케 하는 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현실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의 많은 이들이 피해자와 함께 분노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던 현 정부는 들어라.

지금의 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누구의 시간을 더 쓰도록 하고 있는가. 누가 증거를 찾도록 하고 있는가. 누구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가. 누구의 일상이, 누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는 알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런 피해자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고죄 강화를 외치던 정부는 들어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레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감정 이입하지 말라! 정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미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다.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협박을 넘어 '동의'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저 오래됐으니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가 변하고 있으니까 덩달아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 대한민국 정부통계와 전국성폭력상담소들의 상담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법무부 등의 반대로 “법 개정 계획이 없다”라고 철회하였다. 하지만 그런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 연구’에서조차 정책적 시사점으로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강간 상담을 집계하여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이 무려 71.4%에 달함을 밝혔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23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19개 상담소의 피해지원 상담에서 2022년 1년 동안 상담한 4,765건의 강간사건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 62.5%(2,979건)가 회유, 강요, 속임 등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는 강간이었다. 이 중 많은 사례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통념, 그리고 ‘폭행과 협박 여부’ ‘피해자의 저항 여부’에 걸려져 불송치 또는 불기소되었고 결국 법의 심판대조차 밟아보지 못했다.

대한민국 형법은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링 위에 서서 가해자를 마주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 링 위에 서보지도 못하는 이유가 ‘폭행·협박 없었잖아’, ‘저항 안 했잖아’인 악법은 개정하라! 피해도 억울한데 싸워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낡은 형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협박·저항 여부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자라 불리지 못하고, 역고소당하고,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여 피해자라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을 보호하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는 더 많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연대할 것이다. 강간죄 개정이 될 때까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끝까지 목소리 낼 것이다.

■ 발언 3.

동의를 이미 상식이다

-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폭행이나 협박이 꼭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폭력으로 느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항을 얼마나 했냐고요? 그 상황에서 저는 저항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는 현장에서 피해지원을 하는 많은 기관에서 피해자의 입을 통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실제 성폭력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폭행과 협박이 없는 강간이 7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법은 과거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 개정연대에서는 강간죄를 성립하는 기준과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진행한 ‘원치 않는’ 설문조사는 2023년 5월 22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약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1,346명이었습니다.

본 조사에서 첫 번째 질문은 “강간죄에 폭행, 협박이 필수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이 문항에 형법 제297조 내 강간죄에 폭행과 협박이 필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57.3%였습니다. 반대로 42.7%가 ‘몰랐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간죄 판례 예시를 각색하여 제시하고,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총 1,33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1,307명(97.6%)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강간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16명(1.2%)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강간죄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 결과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고 폭행/협박이 있다면 가중 처벌한다’는 답변에 1,293명(96.1%)이 응답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에서는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 동의’를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에 대한 경험여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변에서 듣거나 혹은 경험하거나 한 사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19명(68.3%)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성폭력상담소가 2022년도에 조사한 결과와 매우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10건 중 7건은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기타 의견에서 강간죄 처벌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또 강간죄가 왜 동의로 해석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점, 강간죄 처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 강간죄 개정에 대한 요구, 구시대적인 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 적극적 합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등 적극적인 강간죄 개정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적어주셨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은 폭행/협박, 저항 혹은 항거불능의 조건이 있어야 성폭력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다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은 당연하게 폭력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었기에 성폭력이라 신고하면 법이 이렇다 보니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폭력은 무고가 많다는 편견이 생깁니다. 이렇게 성폭력 사안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항거해야 피해라고 인정한다니, 목숨 걸고 정조를 지켜야 하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과거의 잘못된 잔재가 남은 시대착오적인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은 모든 성적 접촉은 범죄입니다. 법무부와 국가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강간죄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발언 4.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범죄” 2023년 2월 8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류호정 의원과의 질답 중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이다. 불과 얼마 전 6월 6일, 한국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한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에 강간죄의 정의를 자유로운 동의 부재로 변경할 것을 권고해왔다. 국제 보편적 수준의 인권 기준에 맞추라는 권고를 다시 한번 무시한 것이다. 이뿐인가. 올해 초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과제를 법무부라는 정부 부처가 나서서 무력화 하였다. 비동의강간죄는 억울한 피고인, 억울한 무고를 높이는 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미투운동의 과제로 등장했던 비동의강간죄는 백래시 정권하에서 남성을 위협하는 법인 마냥 이야기되는 중이다. 현행 강간죄의 유지가 어떤 부정한 현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좀 처럼 보려고 하지 않는다.

피해자들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범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고소를 결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강간죄는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의 ‘폭행·협박’ 증명을 요구한다. 이때의 폭행·협박 수준은 강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동일할 만큼 강한 수준을 요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폭행·협박이 동반되는 성폭력은 2019년에 이어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사례에서도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가해자는 성폭력을 행하는 데 있어 명료하고 물리적인 폭행·협박을 동반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성적 시도를 반복하였”으나 무죄,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피해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지만, 무죄,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

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인정되는 범위가 좁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력을 다한 저항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폭행·협박의 수준을 보는 것도 문제다. 피해자의 ‘저항행위가 없는 사안’에 온갖 강간 통념이 적용된다. 거부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연인 사이에서 종전과 유사하게 다툼과 화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로 볼 수도 있으니 무죄, 모르는 사람이 건넨 술을 마시고 모텔로 옮겨져 옷이 벗겨진 채 깨어나 강간 피해를 입었지만, 그 자리를 당장 박차고 나가지 않아서, 음료를 얻어 마셔서 강간 무죄가 내려진다. 판결만이 문제가 아니다. 2021년 강간 사건의 38.32%만이 송치되었고 40.8%만이 기소되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협소한 판단 기준을 통과한 소수의 성폭력 사건만이 처벌되는 것이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지만 판단은 폭행·협박으로 하겠다는 말은 성립 불가능하다. 폭행·협박 판단 기준이 있는 한 피해자가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과정마다 판단되어야 했던 비동의들은 단순한 내심, 관행 등으로 간과되기 때문이다. 위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는 묻는다. “내가 겪은 일은 무엇인가? 폭행 협박이 없었으니 화간인가? 조금 독특한 형태의 성관계였는가?” 그리고 말한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할 것에 절대로 동의한 바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의사가 묵살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언할 것인가? 정부는 무고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강간죄 개정으로 '동의'라는 상식을 법적 사회적으로 세워야 한다.

■ 발언 5.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주세요

-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저는 통칭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성폭력 피해생존자입니다.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상 강간의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제 사건은 불기소 처리되었고, 그에 기인하여 준강간 피해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6년을 예기치 못한 사고로 허무하게 흘려보내게 된 제가 느낀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로서 한마디 엮어 보려 합니다.

‘강간’이라고 한다면 막연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강간은 4대 강력범죄로 분류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강간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여러분이 떠올리거나 혹은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험악하고 폭력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건 당일의 저 또한 처음 겪은 강간 위협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의 거듭된 거절을 가해자는 철저히 묵살했고, 저의 반항 행위는 허무할 정도로 가볍게 제압되었습니다. 그토록 위압적으로 굴었으면서 행위가 끝나자마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행동하는 가해자의 태도 또한 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원치 않는 관계였고 무력행사도 있었으나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개인의 불쾌한 경험으로 끝날 일인지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신고를 하게 된 것은 거절이 있었음에도 발생한 일을 동의한 성관계라고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작한 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강간죄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겪은 일은 무엇입니까? 더 거세게 저항해서 한 대라도 맞을걸, 그랬으면 혹시 결과가 달라졌을까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행동을 했음에도 왜 제가 스스로를 더 위험에 내몰지 않았음을 탓해야만 했을까요?

만약 강간의 구성요건이 동의 여부였다면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저는 훨씬 전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정의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이고 한국 사회에 환멸을 느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저를 외면한 이 사회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한국이 제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동의강간죄’는 꼭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건이 종결되어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수단화, 도구화할 수 없으며,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무력행사가 있건 없건 적극적 동의가 없었다면 합의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이 제야 사회에 인식되기 시작했듯이 '동의 없는 강간' 또한 법과 사회에서 당연히 통용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훨씬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웃 나라 일본도 얼마 전에 만장일치로 '비동의 간음죄'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던 '원치 않은 성교'의 영역을 인정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의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권고하는 등 비동의강간죄 신설 필요성이 이전부터 계속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를 운운하며 정부 과제에서 추진 계획을 삭제하기에 이릅니다.

성폭력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낮은 기소율은 입 닫고 처벌률만을 운운하며 비동의강간죄의 도입으로 성범죄자가 양산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총리가 있고, 성범죄자 전문 카페에서 그들끼리 형량 줄이는 팁을 버젓이 공유하는 나라에서 성범죄에 여전히 관대한 기초를 유지한다는 것은 나라가 나서서 강간을 권장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행의 지속으로 법의 질서가 무너지면, 선량한 시민들의 인식 또한 오염되어 결국 성범죄자를 만연하게 양성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겨우 0.78%에 불과한 성폭력 무고 기소 사례보다는 71.4%에 달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태에 집중해 주실 것을 피해 당사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수치들이야말로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개정된다면 현행법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교묘하게 범망을 빠져 나가며 사회의 질서를 농락하는 성범죄자들에게 제대로 짓값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을 겪었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 주세요. 제 바람이 이루어져 제가 숨 쉬고 싶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혁신적인 결단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